

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

(앞쪽)

[제출처] ☐ 지식재산처장 ☐ 특허심판원장

[신청인]

[성명(명칭)]

[특허고객번호]

[사건과의 관계]

([대리인])

([성명(명칭)])

([대리인번호])

[사건의 표시]

([출원번호, 등록번호 또는 심판번호])

([출원번호, 등록번호 또는 심판번호])

[감면신청사항]

[감면(면제)사유]

[반환신청사항]

[성명(명칭)]

[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]

[은행 및 계좌번호]

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(특허심판원장)에게 제출합니다.

제출인(대리인)

(서명 또는 인)

[첨부서류] 1. 감면(면제)대상 증명서류 1통

2.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

[공무원 확인사항] 입금계좌 확인정보

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(입금계좌 확인정보) 제공 동의서

1.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반환받을 계좌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2. 본인은 금융기관이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 정보(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)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청인(대리인)

(서명 또는 인)

다.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[대리인번호]란의 다음 줄에 [지정된 변리사]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.

[예] [대리인]

[성명(명칭)] 특허법인 ○○○○

[대리인번호] (특허법인의 대리인번호)

[지정된 변리사] 변리사 ○○○, 변리사 ○○○

나.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[대리인번호]란의 다음 줄에 [특기사항]란을 만들어 적습니다.

[예] [대리인번호]

[특기사항] 신청인 ○○○의 대리인

다.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[첨부서류]란에 "위임장"이라고 적고,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,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호서식(위임장)을 참조하여 적습니다.

4. [사건의 표시]란

제출인이 밝으려는 절차에 따라 [출원번호, 등록번호 또는 심판번호]란에 다음 기재 예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.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한 첨부서류로 여러 건의 수수료 사후감면신청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해당 식별항목을 반복하여 작성합니다. 다만, 서로 다른 절차인 출원(출원료, 심사청구료, 출원인변경신고료), 등록(특허료, 실용신안등록료, 디자인등록료, 이전등록료), 심판(심판청구료)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사후감면을 신청할 수 없으며, 출원·등록·심판 각각의 절차마다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
[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 예]

절차별	해당 번호	기재 예
출원에 관한 신청	[출원번호] 권리구분(2자리) - 연도(4자리) - 일련번호(7자리)	10-2009-1234567
등록에 관한 신청	[등록번호] 권리구분(2자리) - 일련번호(7자리) - 일련번호(2자리) - 일련번호(2자리)	30-1234567-00-00
심판에 관한 절차	[심판번호] 연도(4자리) - 사건구분 - 일련번호(6자리)	2009-당-123456

5. [감면신청사항]란

[감면(면제)사유]란에 "개인", "소기업", "중기업", "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", "공공연구기관", "기술이전 전담조직" 등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습니다(공동출원인이 평균감면을 적용받을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). 「특허료 등의 징수규칙」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 또는 면제사유를 적고, 감면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.

6. [반환신청사항]란

가. [성명(명칭)]란에는 감면된 수수료 반환을 위한 반환신청인을 적습니다. 반드시 "사후 감면신청서"상의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어야만 합니다(※ 주의: 제3자가 반환 받기를 원하는 경우, 반드시 해당 반환신청인이 「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」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).

나. [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]란은 위 성명의 실명번호를 적습니다.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을 적고, 법인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.

다. [은행 및 계좌번호]란은 위 신청인(대리인) 또는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계좌번호를 적습니다(※ 주의: 계좌번호 예금주의 실명번호는 [반환신청사항]의 [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]

호]와 반드시 일치해야만 합니다. 불일치할 경우에는 반환 처리되지 않습니다. 외국계 은행(씨티은행 제외), 국고계좌, 가상계좌(CMA 계좌 등), 상호저축은행(일부)의 계좌로는 수수료 반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).

[예][은행 및 계좌번호]00은행 676-01-123456

라. 삭제 <2019. 12. 31.>

7. [첨부서류]란

가.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1) 감면(면제)대상 증명서류 1통
- 2)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
- 3) 삭제 <2019. 12. 31.>

나. [첨부서류]란의 기재방법

- 1)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,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.

[예] [첨부서류] 위임장 1통

- 2) 첨부서류 중 「전자정부법」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(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)에 해당하는 서류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,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,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.

[예]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[상호: 000, 법인등록번호: 000000-0000000]

- 3) 첨부서류 중 「전자정부법」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(주민등록표 등본·초본, 국가유공자확인원 등)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. 따라서,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,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 한편,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[예 1] 주민등록표 등본·초본 1통 [성명: ○○○, 주민등록번호: 000000-0000000]

[예 2]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[성명: ○○○, 주민등록번호: 000000-0000000, 사업자등록번호: 000-00-00000]

[예 3] 국가유공자(유족)확인원 1통 [성명: ○○○, 주민등록번호: 000000-0000000, 보존번호: 000-000000]

다. 서류의 원용

- 1)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(「특허법」 제7조,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함)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,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[예] 위임장 1통 [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]

[서류명] 특허출원서

[출원번호] 10-2007-1234567

- 2)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(「특허법」 제7조,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 제4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함)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,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

[예] 위임장 1통 [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]

[서류명] 심판청구서

[심판번호] 2007-당-123456

라.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(스캐닝)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

- 1)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 (300dpi 권장)까지의 흑백 TIF (Tagged Image File Format)로 합니다.
- 2)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,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(300dpi 권장)까지의 JPEG(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)로 합니다.

마. 첨부서류를 PDF(Portable Document Format)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8. 작성 시 유의사항

서식은 제출인(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)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, 2명 이상의 제출인(대리인)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.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 등록(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 등록,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록) 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,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(경정)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